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

■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45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9. 4.
3. 회 부 일: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반 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현재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미디어 매체, 오락물 등에 쉽게 노출되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졌음.

범죄 패턴이 강하게, 성인들의 이상동기 범죄와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2023년까지 최근 3년 촉법소년 현황 비율은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과거 단순 절도나 폭력에 그치던 것에서 방화, 강간, 추행 등 강력 범죄로 비화하고,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촉법소년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미비한 처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꾸준히 드러나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자 우리나라

라도 현행 교육과정 제도를 고려하여 초등교육 교과 수료 무렵인 만 12세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치적 의미가 강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조정하고, 다만 이 법 제1장 내란의 죄부터 제4장 국교에 관한 죄까지는 만 14세로 함(안 제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내용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였는데¹⁾,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2세로 하향하되, 다만, 내란·외환의 죄 등 일부 국가적 범익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第9條(刑事未成年者) <u>14歲</u> 되지 아니한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u><단서 신설></u>	第9條(刑事未成年者) <u>12세</u> 되지 --- -----. <u>다만, 이 법 제2편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u>

2. 형사미성년자 제도 취지

현행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어 위법한 행위를 비난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 책임능력을 전제로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게 함.²⁾ 그런데 육체적·정신적 성숙 정도는 각 소년³⁾에 따라 다르나 각 개인별 정신적 성숙정도와 사물변별능력 또는 행동 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그때 그때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 형법총론, 이재상·장영민·강동범 공저, 박영사(2015년 8월), 303면.

3)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현행 법률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하의 자에 대하여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부적절하기 때문에 만 14세라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하였음.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 논의는 종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지난 21대국회도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하향⁴⁾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3.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 찬반논거 및 검토사항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하향에 대하여는 이를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⁵⁾

- (찬성론)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견해는 ①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서 제정 이후 6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옛날과 달리 최근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연령에 대한 하향이 필요하고, ② 이른바 ‘가출 팸(Fam)’⁶⁾ 등 최근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③ 외국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4)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3853호),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07847호),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0765호), 김용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2623호), 김희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115136호), 허은아의원 대표발의안(제2115376호), 홍석준의원 대표발의안(제2116151호), 정부안(제2119216호)

5) 이하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향의 찬반론은 이해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제372호(2012.1.27.), 국회입법조사처 등 자료 참조

6)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생존을 위해 생계형 범죄를 일으키거나 가출팸에 소속된 여학생들의 경우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일도 있으므로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음.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6세에서 13세 사이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반대론)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는, ① 14세 미만의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일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② 아직 어린 소년에게 형사처벌하여 교도소 수용 등을 하는 경우 수용기간 동안 범죄성향을 학습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며, ③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하향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 효과 확대 등으로 사회복귀와 회복을 어렵게 하여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⁷⁾ 등을 근거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는 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2세로 하향하되, 다만,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같은 편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과거에 비해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흉포한 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언론 등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낮추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7) 국가인권위원회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2018. 12. 20. 등 참조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각 개인마다 정신적 성숙정도와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임능력을 부인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따라서, 내란죄 등 특정범죄만 기준연령을 달리 정하는 개정안이 형사미성년자 규정 취지와 조화되는지 구체적·개별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해악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및 국교에 관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서만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유지하는 개정안이 적절한지, 해당 범죄를 범한 소년과 다른 범죄를 범한 소년 간 구분은 형평성 있는 차별인지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임.

셋째,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2세’로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 역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미법계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대체로 낮으며[영국 10세, 캐나다 12세, 미국 7세~14세 등(각 주별 상이)], 대륙법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음(프랑스 13세, 독일 14세, 일본 14세).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관련 외국 입법례>8)

국가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영국	10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만 10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범한 범죄는 청소년법원(Youth Court) 관할로 하는데, 만 10세 이상 청소년을 10세 이상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나누어 형벌을 달리 적용함.
캐나다	12세 미만의 청소년은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형사법이 적용됨.
미국	형사책임연령을 정하고 있는 주[7세(플로리다), 8세(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10세(아칸소, 애리조나 등), 11세(네브라스카), 12세(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유타, 델라웨어, 뉴욕), 13세(뉴햄프셔, 메릴랜드)]의 경우 7세부터 14세 사이로 규정. 보통법(common law) 상 형사책임무능력을 7세로 추정하므로, 형사책임 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주에서는 보통법에 따라 7세를 형사미성년자 연령으로 추정함. 모든 주에 소년법원을 설치하고,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프랑스	13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13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의 상황 및 인격이 유죄판결을 정당화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음.
독일	14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하고,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이 범한 범죄는 소년법원법의 적용을 받음.
일본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촉법소년을 14세 미만의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으로 규정함(연령 하한은 두지 않음.)

8) 참고로, 형사책임연령의 파악방법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대체로 7세와 14세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국의 의무교육 연령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 및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임[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2012.3), 20면].

덧붙여,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선고 2002헌마533 결정에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의 결정이 입법정책적 사항임을 전제로 종래 형법에 규정된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⁹⁾을 한 바 있음.

아울러, 국제적으로는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Beijing Rules) 제4조제1항에서 ‘소년의 정서적·정신적·지적 성숙에 관한 사실을 고려하여 소년의 형사책임 개시연령을 과도하게 낮게 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년)¹⁰⁾ 제32항 및 제33항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ACR)을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함과 동시에 만 12세 이상인 국가의 경우에는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음.

9) 이처럼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 략)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며,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0) CRC Committee, General Comment No.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2007. 2. 9.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 국제인권조약은 아니나, 국제인권기구가 국제인권조약의 해석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발달 정도, 실제 소년범죄 발생의 정도 및 태양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 하향 필요성,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예외 인정과 형사미성년자 규정 취지와 조화 가능성, 예외 인정 시 형평성 논란 소지 및 하향 적정 연령 등에 대한 검토,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 합의 정도 및 외국입법례와 국제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입법할 경우, 현재 「소년법」¹¹⁾ 상 소년부 보호사건이나 보호처분 대상과 같이 14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 규정들¹²⁾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¹³⁾

11)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 4. ~ 9. (생략) /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13)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은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소년사법과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이 10세 전후로 낮게 나타나고,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소년사법과 연계하되 분리하는 국가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이 비교적 높은 14세~16세 전후로 나타났다고 함. 반면, 우리나라의 방임아동에 대한 소년사법의 대응은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 소년사법의 보호처분도 실효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음(「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제도와 관계, 김성돈, 국회입법조사처, 2012, 73-74면).

문 의 처
02)6788-5056